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3693
----------	---------

제안년월일 : 2026년 6월 15일
제안자 : 교 통 위 원 장

1. 수 정 이 유

- 동 개정조례안은 유가 상승, 경제 상황 변화 등 외부 요인으로 대중교통 이용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시장이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시민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나 대상과 범위가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반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 요 골 자

- 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에 따른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에너지 위기 발생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계획을 수립·시행을 규정함(안 제19조의2 신설)

3. 참 고 사 항 : 생 략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대중교통 이용집중 대응계획) 시장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에 따른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에너지 위기 발생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신 설>	<u>제19조의2(대중교통 이용집중 대응계획) 시장은 유가 상승, 경제 상황 변화 등 외부 요인으로 대중교통 이용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	<u>제19조의2(대중교통 이용집중 대응계획) 시장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에너지 위기 발생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대중교통 이용집중 대응계획) 시장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에 따른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에너지 위기 발생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19조의2(대중교통 이용집중 대응계획) 시장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에너지 위기 발생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대중교통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대응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